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장기 근무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특례 신설〉

■ 이준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36호)

2024. 9.

환 경 노 동 위 원 회

전문위원 손을춘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동일 사업장에 장기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특례 신설	2

I. 제안경위

2024년 7월 11일 이준석의원이 대표발의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2024년 7월 1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를 받은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가 감소하고 있고, 외국인력 수요가 다양해짐에 따라 이미 유입된 숙련된 외국인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고용노동부도 2023 고용허가제 개편방안에서, 산업·인구구조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체류기간 등의 우대를 통해 외국인력 숙련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을 제안함.

이에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향후 1년 이상 효력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외국인근로자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3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Ⅲ. 검토의견

1. 동일 사업장에 장기 근무한 외국인근로자에게 부여하는 특례 신설

가.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현행 1회에 한하여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연장할 수 있는 취업활동 기간 제한 특례를 외국인 근로자가 일정 기간 이상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거나 업무 숙련도의 향상을 위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준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적응 프로그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정 이수할 경우 에는 1회에 한하여 3년 미만의 범위까지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표]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u>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u>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 ----- ----- <u>다음 각 호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u> ----- -----.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
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
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
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
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
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
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해당하는 외국인근로자: 2년
미만

가.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
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
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
가를 요청한 근로자

나.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
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
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
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
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
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
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
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
자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외국인근로자: 3년 미만

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장받는 취업활동 기간이
시작되는 날부터 1년 이상

② · ③ (생 략)	<u>의 근로계약을 사용자와 체결하고 있을 것</u> <u>나. 업무 숙련도의 향상을 위</u> <u>한 직업훈련 프로그램, 한</u> <u>국어능력 및 사회통합 수</u> <u>준을 검증하기 위한 사회</u> <u>적응 프로그램 등 고용노</u> <u>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과</u> <u>정을 이수하였을 것</u> ② · ③ (현행과 같음)
--------------------	---

나. 검토의견

현행법은¹⁾ 비전문 외국 인력이 국내 장기 거주나 정착으로 직결되는 것을 사전에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취지로 외국인 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면서,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1) 제18조(취업활동 기간의 제한) 외국인근로자는 입국한 날부터 3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다.

제18조의2(취업활동 기간 제한에 관한 특례) ① 다음 각 호의 외국인근로자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한 차례만 2년 미만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다.

1. 제8조제4항에 따른 고용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2. 제12조제3항에 따른 특례고용가능확인을 받은 사용자에게 고용된 외국인근로자로서 제18조에 따른 취업활동 기간 3년이 만료되어 출국하기 전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근로자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외국인근로자의 입국과 출국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책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재고용 허가 요청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에 따라 2년 미만의 범위에서 1회만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 원칙적으로는 총 4년 10개월간²⁾ 취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단기순환의 원칙을 견지하고 있음.

개정안은 이러한 단기순환의 원칙을 완화하여 비전문취업(E-9) 외 국인근로자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2년 이상 근무하면서 동일 사업장 사용자와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한국어능력과 사회통합 수준을 일정 기준 이상 충족하면 1회에 한하여 최대 3년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는 특례를 신설하는 것으로,

① 현행 단기순환의 원칙이 한국에서 장기간의 취업활동을 원하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불법체류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문제를 해결하고, ②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국내 생산인구와 고령화로 인한 방문취업 동포(H-2)의 감소, 기술혁신에 따른 사업 구조 재편 등에 따라 다양해지고 있는 외국인력 수요에 부합한 인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이미 국내에 유입된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도를 높이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임.

개정안은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정착하는 초기 단계에서 동일 사업장에서 장기 근무를 하도록 유도함으로써,

① 외국인 근로자는 업무숙련도를 높일 수 있는 기회와 재입국 과정

2) 다만,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입·출국 제한’이라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운영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이례적이고 일시적인 상황에서만 단기순환 원칙의 예외로서 1년의 범위에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제18조의2제2항, 위 각주1) 참조).

없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고,

② 사용자는 이렇게 숙련된 인력을 계속 활용하면서, 업무공백 발생과 구인 절차의 수고로움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의 의의가 있음.

고용노동부는 동일 사업장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하고, 한국어 능력 등을 갖춘 E-9 인력에 대해 출국-재입국 과정 없이 10년+a 일할 수 있도록 취업기간 제한의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으로 하는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현재 국회환경노동위원회에 회부되어 있는바,³⁾ 그 목적이나 내용이 유사하면서 좀더 구체적인 특례 내용이 규정되어 있는 만큼 개정안은 해당 법률안을 중심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545

3) 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198호)